

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5. 11. 3.
내 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5년 10월 27일

· 회부일자 : 1995년 10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

· 제3차 내부위원회(1995. 11. 3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부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, 축산물등의 시험 검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증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고,
- 조례내용 중 연구직 직렬의 명칭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를 설치하고, 이와 관련한 지소 관할구역 조정
 - 북부지소 : 충주시, 음성군
 - 남부지소 :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
 - 제천시소 : 제천시, 단양군
 - 중부지소 : 괴산군, 진천군
- 지방연구직 및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(대통령령)의 시행에 따른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 조정
 - 지방농업연구관 → 지방가축위생연구관
- 지소장 중 중부지소장은 6급으로 보임하도록 단서규정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현행 충주, 음성지역의 북부지소와 보은, 옥천, 영동의 남부지소, 제천, 단양지역의 제천시소가 운영되어 왔었으나

금번 괴산, 진천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중부지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동지역을 관할하여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구 설치와 관련 그 관할구역의 조정 내용을 조례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○ 주요내용으로는

현행 소장의 임용에 있어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여 오던것에 대해

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 지방가

측위생연구관으로 그 직렬명칭을 변경 조정하여 관련상위법조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

또한 지소장 중 급번에 설치되는 중부지소장에 대하여는 현 정원범위내에서 소장을 임용토록 하기 위하여 6급인 지방가축위생연구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명시하여 개정하리는 것과 충청도내의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 등을 조례 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방대한 관할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가축방역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대비표